

마.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과 공동주택단지 등 다량배출자가 재활용자에게 위탁 재활용하는 경우 상호계약에 의해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함.(안 제12조)

4. 검토보고

-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개정(1997.7.19) 및 경상남도로 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준칙에 근거하여
- 종전에는 포괄적으로 생활쓰레기로 분류하여 배출하던 것을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로 분리 배출토록 하여 쓰레기감량 및 재활용을 유도하고
- 이의 시행을 위해 분리배출방법 및 수수료징수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제11조 수거수수료 및 과태료 부과에 있어 특별한 규정을 두는지
- 답 : 예, 안 설명시 보고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.
11페이지 별표 4에 수수료기준 및 월 수집운반 수수료를 정하고 있음.
- 문 : 현재 사용하고 있는 일반옹기로 사용하면 되지 별도 옹기를 제작할 필요가 있는지
- 답 : 그것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시행코져 하는 것임.
- 문 : 현재 생활쓰레기 분리수거가 잘 되지않는 상태에서 별도의 업자와 관계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지
- 답 : 예.
- 문 : 제11조제3항에 의한 평균배출량의 측정은 누가하며 어떤 사업체가 대상이 되는지, 그리고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
- 답 : 평균배출량의 측정은 군에서 하고 대상은 112개 업소이며, 관리역시 군에서 별도의 관리대장을 만들어 측정결과 등을 기록하여 나갈 계획임.
- 문 : 퇴비화, 사료화에 있어 음식물쓰레기를 이용 비료화가 되는지 또한 음식물 사료화 시설도 설치되어 있는지
- 답 :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장내에 설치되어 있는 숙성장에 숙성시켜 퇴비화 하여 농가에 반출하고 있으며, 사료화 시설은 음식물쓰레기의 수량이 적어 아직 미설치되어 있음.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○ 1998. 6. 1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